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93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윤준병 · 주철현 · 안호영
허성무 · 이춘석 · 이학영
이정문 · 최혁진 · 김 윤
안태준 · 김의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양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보전과”를 “지역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항목에는 환경용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개발사업”을 “개발사업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환경용량</u> ”이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양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u>보전과</u>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6. (생 략)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 1. ----- <u>지역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과</u> ----- -----.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생 략)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
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 -----

-----, 이 경우 환경영향
평가항목에는 환경용량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

 -----.

1. -----

-----개발사업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
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
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
획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